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비대면 조사의 방법 등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(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현지실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실시간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원격 화상통신을 이용한 방법
2.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받는 방법
3. 그 밖에 원활한 조사가 가능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
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해외위생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, 조사 대상 및 목적, 수출국의 정보통신기술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거나 동시에 사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자료 및 영상 등의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사항 이외에 비대면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
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6조의2(비대면 조사의 방법 등)</u> <u>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(법 제 9조제1항에 따라 현지실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<u>1. 실시간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원격화상통신을 이용한 방법</u> <u>2.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받는 방법</u> <u>3. 그 밖에 원활한 조사가 가능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</u> <u>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, 조사 대상 및 목적, 수출국의 정보통신기술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거</u>

나 동시에 사용하여 실시 할 수 있다.

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자료 및 영상 등의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사항 이외에 비대면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수입식품정책과	
연 락 처	043-719-2162